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

협의회 규약(안)



구 미 시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14.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에 따라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이 지역생활권을 구성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 협력 하기로 함에 따라
- 나. 상호 협력을 통한 주민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생활권사업을 협의·총괄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 다. 생활권 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자원의 공동활용 등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 명칭 (안 제2조)
- 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안 제3조)
- 다. 협의회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안 제4조)
- 라.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안 제5조)
- 마. 실무협의회 운영 (안 제8조)
- 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췌서 별첨

1) 「지방자치법」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나. 기 타 : 규약안 별첨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 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권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는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는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은 구미시장, 김천시장, 칠곡군수로 하고 회장은 자치단체의 인구 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2.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동사업 발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지역행복생활권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5. 협의회 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

제6조(사무소)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 내에 둔다.

제7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 자문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협의회 결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 소속 자치단체의 지역행복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부서장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지역행복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본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 회의에 상정한다.

②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표결 권한을 부여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참석) ① 협의안건에 따라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제13조(협의사항 처리) 본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사항의 조정)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규약개정)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②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7. > [전문개정 2009.4.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 2014.1.7. >

1.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경제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도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경제협력권산업"이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협력권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8. "농산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7조의2(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이하 "지역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②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발전계획과 시·도 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생활권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본조신설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

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도 계획,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 9.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 10. 지역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4.1.7. >

[전문개정 2009.4.22.]

제29조(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30조(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7. >

소 관 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입 안 자	과 장 직위 · 성명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희
	계 장 직위 · 성명	기획계장 박 은 희
	담 당 자 성명 · 전화	이 은 희 (480-6502)